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5. 6. 1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3호, 2025. 6. 1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 044-201-1342, 13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농림축산식품부

제2조 삭제 <2022. 12. 20.>

제3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8. 9. 11., 2023. 8. 30.>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개정 2016. 7. 12.>

1. 주요 정책 홍보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부내 업무의 브리핑, 보도자료, 인터뷰 등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3.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오보·왜곡보도 등 대응에 관한 사항
4. 정책광고, 각종 홍보물 발간 및 홍보기법 개발에 관한 사항
5. 농업·농촌 가치 홍보에 관한 사항
6. 부내 및 소속기관 협력 홍보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8. 9. 11.>
8. 삭제 <2018. 9. 11.>
9. 삭제 <2018. 9. 11.>
10. 정책홍보평가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7. 12. 29.>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신설 2018. 9. 11.>

1. 디지털 소통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실시간 이슈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소통 콘텐츠 제작에 관한 사항
4. 부(部)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
5. 부처 온라인 정책홍보평가 관련 대응에 관한 사항
6. 부(部)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2. 12.]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9. 8.>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9. 8., 2022. 12. 20.>

③ 정책기획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8., 2021. 12. 14., 2022. 12. 20.>

④ 국제협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3항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8., 2022. 12. 20.>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3항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 12. 20.>

⑥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통계정책담당관·국제협력총괄과·농업통상과·검역정책과 및 자유무역협정팀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통계정책담당관·국제협력총괄과장·농업통상과장·검역정책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유무역협정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2. 12. 20., 2023. 8. 30.>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 1. 6., 2020. 9. 8., 2022. 12. 20.>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 및 종합·조정
3. 국회업무보고 작성 및 정당과의 업무협조
4. 각종 정책 의제관리
5. 대통령지시사항 및 국정관리과제에 관한 사항
6. 세입·세출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총괄
7.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8. 예산·기금관련 법령 및 회계제도 관리
9. 농림축산식품부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10.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총괄
1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의 운영
12. 농림축산식품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13. 그 밖에 정책기획관 소관사무 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12., 2015. 1. 6., 2017. 8. 8., 2020. 9. 8., 2022. 12. 20.>

1.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부내 변화관리 계획의 수립 및 점검·평가
2.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의 총괄
- 2의2. 부 내 정부혁신 추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점검·평가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각종 위원회의 운영 지원
5. 부내 통합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6. 소속 공무원의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
7.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관리
9. 정부업무(주요사업, 인사, 조직 등) 평가 총괄

10. 농림축산식품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포함한다)
11.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총괄
13.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14. 농림축산사업 투융자 효율성제고에 관한 사항
- ⑨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개정 2020. 9. 8., 2022. 12. 20.>
 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입법추진계획의 수립 및 법령안의 심사
 3.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4.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이양업무의 총괄
 5.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례회의 안건 검토 총괄
- ⑩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개정 2015. 1. 6., 2020. 9. 8., 2021. 12. 14., 2022. 12. 20.>
 1.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정보화 평가
 2.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3. 농림축산식품 정보화종합설계도(EA)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 농림축산식품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의 데이터 구축 및 관리
 7. 농림축산식품 정보 관련 단체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8. 농업경영체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사항
 10. 농림축산 통계업무의 기획·조정
 11. 국내외 농림축산 통계의 수집·가공·분석 및 자료관리
 12. 국제농업정보·통계의 수집 및 동향분석
 13. 농업정보·통계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 ⑪ 국제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개정 2022. 12. 20.>
 1. 농업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
 2. 국제 농업 관련 단체 및 농업 관련 해외 주재 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
 3. 농업통상기획에 관한 사항
 4.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등과의 농업협력에 관한 사항
 5. 개별국가와의 농업협력 및 농업통상현안에 관한 사항
 6.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적개발원조사업에 관한 사항
 7. 글로벌농림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추진·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국제기구, 지역농업기구, 국제구호단체, 외국정부, 국제민간기구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적개발원조사업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무상개발협력 시행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11. 한국국제협력단의 농업분야 무상원조 추진 관련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2. 주요국의 농업 정책 및 통상 정책의 정보수집·분석 및 배포
 13.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농림분야 운용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14. 해외농업개발 중장기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15.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신고·추진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6. 해외농업투자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17. 해외농업개발심의회에 관한 사항
18.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국제협력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⑫ 농업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신설 2022. 12. 20.>
 1. 세계무역기구의 농업분야 다자협상에 관한 사항
 2. 세계무역기구의 농업분야 무역분쟁에 관한 사항
 3. 세계무역기구의 농업분야 이행 및 통보에 관한 사항
 4. 세계무역기구의 농업분야 가입 및 무역 정책검토에 관한 사항
 5. 세계무역기구의 통일 원산지에 관한 사항
 6. 세계무역기구의 농업 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세계무역기구 외 개도국간 무역특혜공여 및 다자협상에 관한 사항
 8.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및 관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농산물 수입제도의 운영 및 농업분야 산업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사항
 10. 남·북간 농산물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
 11. 경제협력개발기구 관련 업무 및 국내정책과의 조화 유도
 12. 농업환경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 관련된 농업통상 및 기술협력
 14.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관련된 농업통상 및 기술협력
- ⑬ 검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신설 2022. 12. 20.>
 1.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식물방역법」의 운용
 3. 수출입 식물 검역에 관한 사항
 4.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
 5. 동식물 검역 및 위생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농산물 분야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SOFA)에 관한 사항
 7.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관한 사항
 8.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에 관한 사항
 9.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동물질병 지역화 등 수입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11. 동물 및 축산물 수입위생조건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운용
 12. 「가축전염병 예방법」(검역분야로 한정한다)의 운용
- ⑭ 자유무역협정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신설 2022. 12. 20., 2023. 12. 27.>
 1.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기본전략 및 대응계획의 수립
 2.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상품양허 협상에 관한 사항
 3. 지역무역협정 동식물 위생·검역 협상에 관한 사항
 4.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원산지 및 지적재산권 협상에 관한 사항
 5.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투자 및 서비스 협상에 관한 사항
 6.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분쟁해결 및 무역구제 협상에 관한 사항
 7.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의견수렴 및 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8.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협정문 작성 및 협의에 관한 사항
 9.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합의사항 이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0. 지역무역협정 국내외 동향 파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의 조정
2.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속 외청에 대한 감사
3. 농림축산식품부 산하단체(공공기관을 포함한다) 및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감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및 사정업무
6.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6조의2 삭제 <2021. 12. 14.>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제8조(농촌정책국) ① 농촌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촌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으로 하며,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2. 12. 20.>

③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2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농촌정책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 12. 20.>

④ 농촌정책국에 농촌정책과·농촌공간계획과·농촌사회서비스과·농촌경제과·농촌여성정책팀·농촌재생지원팀·동물복지정책과·농촌탄소중립정책과 및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농촌여성정책팀장·농촌재생지원팀장 및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9. 12., 2017. 2. 28., 2019. 6. 27., 2019. 10. 31., 2022. 12. 20., 2023. 8. 30., 2023. 12. 27.>

⑤ 농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9. 12., 2015. 8. 31., 2015. 12. 23., 2016. 7. 12., 2017. 2. 28., 2017. 12. 29., 2019. 7. 23., 2022. 5. 25., 2022. 12. 20., 2023. 2. 28.>

1.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 기본계획 및 중장기 투융자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농촌지역 개발, 농촌산업 활성화 등 농촌정책의 총괄
3. 중장기 농촌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3의2. 농식품산업의 중장기 미래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운영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6. 농촌 정책관련 관계부처 법령 제·개정 및 정책협의 총괄
7. 농촌개발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국립농업박물관법」의 운영
9. 산림청 업무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11.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2. 5. 25.>
13. 삭제 <2019. 10. 31.>
14. 농업인 단체의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5.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16. 농업 관련 정책연구과제 개발에 관한 사항
17. 농정 및 식품산업 연차보고서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19. 7. 23.>
19. 농어업회의소 지원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⑥ 농촌공간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7.>

1. 삭제 <2024. 3. 26.>
2. 농촌공간 정책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촌공간계획 국가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4.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의 지정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5.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농촌특화지구 종류별 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6.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7. 농촌협약에 관한 사항
8. 농촌공간정비에 관한 사항
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10. 한계농지의 정비계획 수립 및 조정
11. 삭제 <2024. 3. 26.>

⑦ 농촌사회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9. 12., 2016. 5. 10., 2017. 2. 28., 2019. 6. 27., 2021. 6. 29., 2022. 5. 25., 2022. 12. 20.>

1. 농촌 복지증진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2. 5. 25.>
4. 삭제 <2019. 6. 27.>
5. 삭제 <2019. 6. 27.>
6. 삭제 <2019. 6. 27.>
7. 삭제 <2019. 6. 27.>
8. 삭제 <2019. 6. 27.>
9. 고령 등 취약계층 농업인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9. 6. 27.>
11. 농촌 공동체회사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2. 5. 25.>
13. 삭제 <2022. 5. 25.>
14. 삭제 <2022. 5. 25.>
15. 삭제 <2022. 12. 20.>
16. 사회적 농업 육성 등 농촌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22. 12. 20.>

⑧ 농촌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 9. 12., 2017. 2. 28., 2017. 12. 29., 2019. 7. 23., 2022. 12. 20., 2023. 12. 27.>

1. 농촌 산업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3. 농촌의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활력증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평가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6. 농촌지역 특화·향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농촌산업 육성지원기구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8. 농촌자원복합산업분야 포괄보조금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10. 농촌산업 정책의 부처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11. 농촌산업 박람회에 관한 사항
12. 삭제<2017. 12. 29.>
13. 삭제<2017. 12. 29.>
14. 도농교류 협력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삭제<2023. 12. 27.>
16. 농촌체험 및 휴양기반 확충 등 농촌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7.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8. 도농교류 지원기구 운영 및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19.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의 운영
20. 도농교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21. 농촌 산업 관련 교육·인력 육성 및 지원체계 수립 추진
22. 농촌경관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23.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 ⑨ 농촌여성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9. 6. 27., 2022. 5. 25., 2022. 12. 20.>
 1. 여성농업인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력의 경영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정책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농촌여성·가정 등의 복지에 관한 사항
 7.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8. 여성농업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여성농업인 노동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여성농업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1. 농업·농촌 분야 양성평등 의식·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2.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3.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4. 농촌 학생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15. 농촌 전통문화 및 문화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16. 농촌 교육여건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 ⑩ 농촌재생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3. 12. 27., 2024. 3. 26.>
 1. 농촌 지역 권역별, 읍·면 종합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통합적 지역개발 정책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의2. 농촌지역의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및 지원체계 수립 추진
4. 농촌 주택개량에 관한 사항
5. 일반농산어촌개발분야 포괄보조금제도의 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 6의2. 농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분야 부문별 계획·시행계획 수립,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자체평가 및 연차보고서 작성 지원
9.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⑪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 12. 20., 2023. 12. 27.>
 1.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학대 방지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5. 삭제<2023. 8. 4.>
 6. 동물실험윤리 정책에 관한 사항
 7. 「동물보호법」 및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의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⑫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2. 12. 20., 2023. 12. 27.>
 1. 농식품 분야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2. 농촌지역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업 바이오매스(축산분뇨는 제외한다)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농촌지역 에너지 자립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의 조정·관리
 5. 농식품분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업무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6.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감축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7. 농식품 분야 배출권거래제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8. 농식품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등록·평가·검증·인증 등 상쇄제도 운영
 9. 농식품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
 10.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녹색성장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대응에 관한 사항
 12. 농업 분야 온실가스의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4.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탄소저감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 ⑬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2. 12. 20., 2023. 8. 4., 2023. 12. 27.>
 1.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관련 산업 및 영업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양육 인프라 구축, 의료 및 보험 정책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관련 국가자격(행동지도사) 운영 및 민간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보호기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수의사법」의 운용
 7. 수의인력의 수급 및 수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8. 반려동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농업혁신정책실) ①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혁신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농식품혁신정책관·농업정책관 및 식품산업정책관으로 하며, 농식품혁신정책관·농업정책관 및 식품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농업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3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식품산업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33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⑥ 농업혁신정책실에 스마트농업정책과·첨단기자재종자과·과학기술정책과·친환경농업과·빅데이터전략팀·농업경영정책과·농지과·공익직불정책과·농업금융정책과·재해보험정책과·청년농육성정책팀·푸드테크정책과·식품외식산업과·농식품수출진흥과 및 그린바이오산업팀을 두되, 과학기술정책과장 및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빅데이터전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청년농육성정책팀장 및 그린바이오산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농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다른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4. 18., 2023. 5. 31., 2023. 8. 30.>

⑦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팜 등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에 관한 사항
2. 농업생명분야(스마트농업을 포함한다) 정책 기획 및 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식품분야 신기술·신사업 업무에 관한 사항
4. 농식품분야 미래이슈 관리에 관한 사항
5. 스마트팜 혁신밸리 및 실증단지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6. 스마트팜 청년창업 지원 및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7. 스마트팜 수출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식품혁신정책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식품 ICT 기자재·통신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운용
3. 농업기계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화 및 농업기계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3. 2. 28.>
6. 「비료관리법」의 운용
7. 비료의 수급·품질관리 및 제조·수출입에 관한 사항
8. 토양의 지력증진에 관한 사항
9. 「농약관리법」의 운용
10. 농약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1. 종자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2. 종자산업 관련 대외협력
13. 국립종자원에 대한 지도·감독
14.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보호법」의 운용

⑨ 과학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림식품 과학기술 정책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농림식품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농림식품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사업평가
4.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농림식품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농림식품 관련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의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농촌진흥청의 업무에 관한 사항
10. 「농림수산물과학기술육성법」의 운용
11. 농식품분야 다부처 국가연구개발 협력에 관한 사항
12. 도시농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14. 농식품분야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과 대외 대응
- ⑩ 친환경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추진
 2.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의 추진 및 기술개발지원
 3. 유기농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지원
 4. 자연순환농업에 관한 사항
 5.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운영
 7.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의 운영
 8.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9.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협정에 관한 사항
 10.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1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 ⑪ 빅데이터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 관련 데이터의 총괄수집 및 분석지원
 2. 농업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거버넌스 체계 마련
 3. 농업경영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의 구축
 4. 영농단계별 농업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정보 제공
 5.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농작업데이터 자동수집체계의 구축
 6.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
 7.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8. 농업·농촌 정보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⑫ 농업경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 2. 28.>
 1. 중장기 농가소득·경영안정 정책 및 제도의 개발
 2. 통일농업 정책의 수립 및 북한농업지원업무의 총괄
 3. 삭제 <2023. 2. 28.>
 4. 지역농업 활성화 및 지역농정 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3. 2. 28.>
 6. 농업 관련 장기 전망지표의 정리 및 예측
 7.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기금의 운용

8.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운용
10. 농업분야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11.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2. 삭제<2023. 2. 28.>
13. 농업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사항
14. 삭제<2023. 2. 28.>
15. 삭제<2023. 2. 28.>
16. 삭제<2023. 2. 28.>
17. 농업기계 및 농업용 석유류의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
18. 농업 관련 조세·부담금·공공요금 업무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농업정책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⑬ 농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지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2. 「농지법」의 운용
3. 농지의 소유 및 보전·이용에 관한 사항
4. 농업진흥지역의 관리 및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5. 농지관리기금의 관리·운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농지은행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영농의 규모화 추진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8. 농지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9. 농지의 종합정보화에 관한 사항

⑭ 공익직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 수립 등 운영 총괄
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운영
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공익직접지불제도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경영이양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
8. 논활용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⑮ 농업금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분야 금융 및 대출제도의 개선·운영에 관한 사항
2. 농업종합자금 등 농업자금의 제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업무 총괄 및 위탁관리기관의 업무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및 농림업자의 대손보전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농업자금 및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
6. 농가부채 경감 대책에 관한 사항
7.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후속조치 등 협동조합 선진화에 관한 사항
8. 농업협동조합의 설립·해산의 인가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9. 농업협동조합의 정관례 제정·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출자자·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11.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호금융 업무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23. 2. 28.>
1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운용에 관한 사항
1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사업활성화 점검·평가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업·축산경제부문 경영평가 및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1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18. 조합공동사업법인 관련 제도개선,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⑯ 재해보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재해 대책 추진 및 농업기상 정보의 수집·전파
 2.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경감 대책 추진
 3. 농업정책보험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및 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5. 가축재해보험 제도 및 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6.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제도 및 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7. 농어업재해보험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8. 「농어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대책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농어업재해보험법」(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운용
 9. 농업수입보장보험 제도 및 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 ⑰ 청년농육성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2. 28.>
 1. 농업인력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후계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3. 농업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한국농수산대학교에 관한 사항
 5.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7. 농업경영컨설팅에 관한 사항
 8. 도시민의 귀농·귀촌 등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⑱ 푸드테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 및 푸드테크 산업 육성·진흥에 관한 사항 총괄
 2.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식품산업진흥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식품 및 푸드테크 산업 통계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한국식품연구원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6. 식품산업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식품산업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농식품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에 관한 사항
 9. 「식품산업진흥법」의 운용
 10.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11. 식품의 산업표준규격 및 국제식품규격 운영
 12.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식품산업정책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⑲ 식품외식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발효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김치산업육성 및 세계 김치연구소 업무에 관한 사항
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4. 식품제조·가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식품업체 규모화·시설현대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농업인의 식품가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농업생산자와 식품업체 간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8. 식품 외식종합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김치산업 진흥법」의 운용
10. 식품명인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11. 식품소재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2. 설탕산업의 관리·육성에 관한 사항
13. 식품산업 컨설팅에 관한 사항
14.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5. 외식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6. 식재료 가공산업의 육성 및 식재료 유통개선에 관한 사항
17. 한식 세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8. 한식업체 해외진출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9. 한식 및 식문화의 국내외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0. 해외 우수 한식당 추천제 운영 및 해외 한식당 협의체 등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21. 한식 우수성 해외홍보에 관한 사항
22. 「외식산업 진흥법」 및 「한식진흥법」의 운용

㉔ 농식품수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 4. 18.>

1.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시책 수립·시행
2. 농산물 및 식품의 해외홍보, 무역정보의 수집 및 해외시장개척
3.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수출물류제도의 운영
4.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수출경영체 육성 및 관련단체의 지원
5. 식재료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6. 농식품 수출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농식품 해외 전진기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수출 농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농식품의 수출 통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0. 농식품의 수출 국제협력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11. 농식품 수출신용·보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㉕ 그린바이오산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농식품 생명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
3.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농식품 생명산업 관련 대외협력
5. 곤충산업 육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
6.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기능성 양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전문개정 2022. 12. 20.]

제10조(방역정책국) ① 방역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방역정책국에 방역정책과·구제역방역과 및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를 두며, 방역정책과장 및 구제역방역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 8. 30.>

③ 방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질병에 대한 방역제도의 운영 및 방역 대책의 수립·시행
2. 동물질병의 방역기술 표준화 및 방역지침 개발
3.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운용
5. 가축전염병 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6. 지휘소연습(CPX) 주관
7.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의 운용
8. 공중방역수의사 제도의 운영 및 공중방역수의사 관리에 관한 사항
9. 위기대응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10. 가축방역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구제역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大)·중(中)가축의 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을 포함한다) 방역 대책 수립·추진
2. 구제역 등 대·중가축의 백신 대책 수립 및 운영
3.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운영
4. 농장(대·중가축)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⑤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小)가축의 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을 포함한다) 방역 대책의 수립·추진
2. 동물약품제도의 운용 및 동물약품 산업육성 등에 관한 사항
3. 인수공통전염병 대책위원회의 운영
4.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운영
5. 농장[소(小)가축]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6. 가축 매몰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백신 수급계획 수립 및 관리
8. 조류인플루엔자 등 소가축 백신 대책의 수립 및 운영

[전문개정 2022. 12. 20.]

제11조(식량정책실) ① 식량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식량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식량정책관·축산정책관 및 유통소비정책관으로 하며, 식량정책관 및 유통소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축산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식량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식량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축산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3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식량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유통소비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21호부터 제3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식량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⑥ 식량정책실에 식량정책과 · 식량산업과 · 농업기반과 · 농업시설안전과 · 전략작물육성팀 · 축산정책과 · 축산경영과 · 축산환경자원과 · 축산유통팀 · 유통정책과 · 식생활소비정책과 · 원예산업과 · 원예경영과 · 농축산위생품질팀을 두되, 축산경영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축산환경자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전략작물육성팀장 · 축산유통팀장 및 농축산위생품질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농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다른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 8. 30., 2024. 12. 3.>

⑦ 식량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정책 총괄 및 양곡수급기본계획의 수립 · 조정
2. 국가식량안보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쌀 공공비축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수립 · 조정
5.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식량 관련 국제자료 조사 · 연구 및 해외곡물 수급동향 분석
7. 식량 관련 국제협력 · 통상협력 및 남북교류 협력
8. 쌀 수출입에 관한 사항
9. 「양곡관리법」의 운용
10.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운용
11. 쌀 목표가격의 설정 고시 및 목표가격 변경의 국회동의에 관한 사항
12. 양곡유통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13. 양곡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14. 정부관리양곡의 매입 · 보관 및 판매
15. 양곡가격 등 유통정보조사 및 유통지도 · 단속
16. 그 밖에 식량정책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 식량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 12. 27.>

1. 쌀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삭제 <2024. 12. 3.>
3. 농작물의 병충해 예방 및 방제에 관한 사항
4. 쌀 전업농의 선발 및 교육 · 훈련에 관한 사항
5. 미곡종합처리장의 운영 지원 및 경영평가 · 개선에 관한 사항
6.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4. 12. 3.>
8. 쌀 자조금 사업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4. 12. 3.>

⑨ 농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 12. 27.>

1. 농촌용수 이용합리화 계획의 수립 · 추진에 관한 사항
2. 농촌용수 개발 계획의 수립 · 추진에 관한 사항
3. 농업용 지하수의 이용, 관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가뭄 상황 관리 및 대책의 수립 · 추진에 관한 사항
5.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운용
7. 물관리위원회 및 물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농업생산기반정비 관련 국제 협력·교류에 관한 사항
9. 농업생산기반정비 총사업비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농업생산기반정비 관련 연구 및 건설기준에 관한 사항
11. 간척종합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2. 간척지 활용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3. 농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용에 관한 사항
15. 새만금사업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새만금 공유수면 관리 및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7.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계획의 수립·추진

⑩ 농업시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 12. 27.>

1.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2. 대단위 농업기반 재정비사업 계획의 수립·추진
3. 배수개선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4. 농업생산기반시설 풍수해의 예방 대책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5.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진단 및 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6. 수리시설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농업용수 수질오염 방지 대책의 수립·시행
8. 「방조제 관리법」의 운용
9. 방조제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운용
11. 지방자치단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지진방재종합 대책에 관한 사항
14.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예방 계획에 관한 사항
15. 환지대행법인 및 환지사자격시험 제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⑪ 전략작물육성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4. 12. 3.>

1. 전략작물(「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른 전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육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전략작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항
3. 전략작물의 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서류 및 잡곡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항
5. 양곡(쌀은 제외한다)의 수출입 관련 업무의 총괄
6.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⑫ 축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12. 3.>

1. 축산발전기본계획의 수립
2. 축산자금의 지원·관리 및 축산업등록제에 관한 사항
3. 한국마사회의 지도·감독 및 마필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
4. 「축산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한국마사회법」, 「말산업 육성법」, 「도축장 구조조정법」 및 「축산자 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운용
5. 그 밖에 축산정책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⑬ 축산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12. 3.>

1. 축종별 산업발전 대책의 수립·추진

2. 축종별 생산기술의 보급 및 지원
3. 축산자조금 운용에 관한 사항
4. 주요 축종의 수급에 관한 사항
5. 송아지 생산안정 및 양돈·양계 계열화 사업
6.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낙농체험사업
7. 우유 등 유제품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8. 대북축산협력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9. 「낙농진흥법」의 운용
10. 가축개량종합계획의 수립·지원
11. 축산물 브랜드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2. 축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⑭ 축산환경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12. 3.>
 1. 친환경축산 육성 대책의 수립·추진
 2. 환경친화 축산농장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3. 축산 관련 환경오염의 방지 및 축산분뇨의 처리·이용(바이오에너지를 포함한다) 대책의 수립·추진
 4. 가축 사육환경의 개선 및 축산분뇨 등의 자원화 지원
 5. 축산 기자재에 관한 사항
 6. 초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료작물의 생산·지원 및 이용에 관한 사항
 8. 볏짚 등 국내 부존자원의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사료산업의 육성과 사료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10. 「초지법」 및 「사료관리법」의 운용
- ⑮ 축산유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12. 3.>
 1. 도축·가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3. 축산물 등급제도의 운영 및 지원
 4. 축산물 이력시스템의 운영·관리
 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용
- ⑯ 유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12. 3.>
 1. 농산물유통구조개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산지유통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
 4. 농산물유통중사자와 생산자에 대한 유통교육 총괄
 5.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농산물 및 식품 가격안정 대책 종합·조정
 7. 농산물도매시장과 공판장의 시설·운영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
 8. 원예농산물 자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농산물 생산·유통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
 10. 농산물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항
 11. 산지유통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의 운용
 13. 원예농산물 비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유통소비정책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⑰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12. 3.>

1.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소비자보호정책의 총괄
2. 농식품분야 소비자 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농식품종합정보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운용
5. 「식생활교육지원법」의 운용
6.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른 식생활 및 식문화 보급·전파에 관한 사항
7.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에 관한 사항
9.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0. 농산물 직거래 및 소매유통에 관한 사항
11. 소비지·산지 협력에 관한 사항
1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용
13. 농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사항
14.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지역먹거리계획 및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

⑱ 원예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12. 3.>

1. 채소류(과채류를 제외한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용작물의 생산 및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2. 채소류·특용작물의 수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채소류·특용작물의 계약재배·수매·저장 및 유통업무에 관한 사항
4. 채소류·특용작물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채소류·특용작물의 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
6.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운용
7. 채소류·특용작물의 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8. 특작용 기자재 보급·지원
9. 인삼산업 육성 및 생산·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10.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의 추진에 관한 사항
11. 「인삼산업법」의 운용
12. 농산물의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
13. 농업관측 통계정보에 관한 사항

⑲ 원예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12. 3.>

1.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생산 및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2.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수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계약재배·수매·저장 및 유통업무에 관한 사항
4. 과채류·과수류·화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
6.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자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8. 시설원예산업 육성 및 현대화에 관한 사항
9. 시설원예 에너지 대책에 관한 사항

⑳ 농축산위생품질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12. 3.>

1. 농산물의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및 지도
2.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농장, 도축장, 집유장 관련 축산물 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 농장, 도축장, 집유장 관련 축산물 위생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농장, 도축장, 집유장의 위생 관리 총괄
6. 농장, 도축장, 집유장의 검사에 관한 사항 총괄
7. 농장, 도축장, 집유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
8. 농산물우수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
9. 농산물의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1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운용
11.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에 관한 사항
12. 지리적 표시제에 관한 사항
13. 제9호에 따른 인증제도, 제11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제 및 제12호에 따른 지리적 표시제의 홍보에 관한 사항
14.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 12. 20.]

제11조의2 삭제 <2022. 12. 20.>

제12조 삭제 <2022. 12. 20.>

제3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제13조(농림축산검역본부)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과 및 동식물빅데이터팀을 두며,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획조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동식물빅데이터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5. 2. 26., 2016. 5. 10., 2017. 8. 8., 2021. 12. 14., 2023. 8. 30.>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육·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4. 직원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5. 기록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예산의 집행 및 수입관리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 감사·복무관리 및 청렴대책에 관한 사항
 11. 민원제도개선 및 행정정보공개 운영
 12. 공무원 단체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검역본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홍보 및 국회 업무에 관한 사항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통합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7. 변화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8. 수의사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
9. 도서·정보자료의 구입·수입·보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동식물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1. 12. 14.>
 1. 검역본부 내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정보화 평가에 관한 사항
 2. 검역본부 내 정보화 예산의 검토 및 조정
 3. 검역본부 내 정보화종합설계도(EA)의 구축·운영
 4.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사항
 5. 동식물 관련 빅데이터 기반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6. 동식물 관련 빅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
 7. 검역본부 내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8. 검역본부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⑥ 삭제<2017. 8. 8.>

제14조(동물질병관리부) ① 동물질병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동물질병관리부에 방역감시과·동물검역과·역학조사과·질병진단과·위험평가과·동물보호과·동물약품관리과·동물약품평가과 및 가축질병방역센터를 두되, 방역감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동물보호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다른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가축질병방역센터장은 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17. 8. 8., 2023. 8. 30.>
- ③ 방역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 8. 8., 2021. 12. 14.>
 1. 가축질병방역센터 운영 및 감독
 2. 동물질병 방역기술에 대한 지도·교육 및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등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3. 가축질병예찰계획의 수립, 정보 수집·분석 및 가축전염병중앙예찰협의회 운영
 4. 가축질병 병성(病性)감정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가축질병진단액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6. 축산차량관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7. 삭제<2021. 12. 14.>
 8.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동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 동물(그에 수반하는 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 업무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통계
 4.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시행장·해외작업장의 관리
 5.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한 소 개체식별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6. 검역탐지견의 운영 및 관리
 7. 관리수의사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8.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정보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9. 삭제<2013. 9. 12.>

10.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운영에 관한 사항
11. 도축장 및 집유장의 검사관의 위생관리, 검사 및 검사관·검사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⑤ 역학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1. 5. 6.>
 1. 국내발생 주요 동물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연구
 2. 동물질병 역학조사 및 분석기법에 관한 개발·연구
 3. 동물질병의 역학정보 수집·분석 및 역학시스템 개발·연구
 4. 동물질병 발생통계, 병성감정실적, 혈청검사실적 등 역학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5. 삭제<2021. 5. 6.>
 6. 가축방역분야 특별사법경찰관 운용에 관한 사항
 7.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
- ⑥ 질병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질병의 병성감정 및 이와 관련된 민원업무
 2. 국가방역사업으로 수행하는 동물질병의 예찰·검색 및 조사사업
 3. 동물질병의 병리기전(病理機轉) 및 병리학적 진단방법에 관한 연구
 4. 동물질병의 혈청검사 등 진단기술의 적용에 관한 사항
 5. 병성감정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정도(精度)관리 및 진단기술 보급
 6. 삭제<2013. 9. 12.>
- ⑦ 위험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 및 축산물(검역 관련 사항에 한한다) 위험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2. 동물 및 축산물(검역 관련 사항에 한한다) 국가별 위험·검역정보의 수집·분석 및 국가간 교환
 3. 동물 및 축산물(검역 관련 사항에 한한다) 수입금지지역 평가 분석 및 관련 규정 운용
 4. 인수공통전염병 등 위해요인별 수입위험평가
 5. 동물 및 축산물 수입과 관련한 가축위생 실태조사
 6.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해외정보 수집
 7.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⑧ 동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보호·관리에 관한 정책·제도의 개발·연구
 2. 동물소유자 등록제,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 등록제 운영지원
 3. 실험동물 우수 유전자원 개발·연구
 4. 동물실험윤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동물사육관리실태 조사 및 관련제도 개발
 6. 동물보호감시관·명예감시관 제도 운영 지원
 7. 동물보호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교육·홍보 지원
 8. 동물보호 관련 국제협력 및 조사·시험·연구
- ⑨ 동물약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이하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안전관리·평가에 관한 사항
 2.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재평가 및 재심사
 3.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업·수리업에 대한 허가·신고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4.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 등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약사심의위원회 및 연구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
 6. 동물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 제도 운용
 7.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측정기관 지정 및 피폭선량(被曝線量) 관리센터 운영 등 동물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⑩ 동물약품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 9. 12., 2024. 3. 26.>

1.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국가검정 및 검정시료 채취에 관한 사항
2. 수거되거나 분석의뢰된 동물용 의약품의 검사
3.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시험·연구
4. 동물용의약품등의 기준·규격 및 시험방법 마련 등에 관한 사항
5.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6.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독성평가 및 독성방제에 관한 시험·연구
7.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체내대사 및 잔류성 평가·연구 및 안전사용기준 개발
8. 수의(獸醫) 독성학에 관한 시험·연구
9.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축산물 등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연구

⑪ 가축질병방역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7. 8. 8.>

1. 지역 가축질병 현황에 따른 국가적 가축질병 예찰사업 추진
2. 지방자치단체 및 농가의 방역이행사항에 대한 교육, 점검 및 관리감독
3. 구제역, 소 해면상뇌증(BSE) 등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합동 역학조사 실시
4. 구제역, 신종질병 의심신고시 신속한 초동대응 등 현장 방역조치 지도·지원
5. 가축질병 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지역 방역대책 시행
6. 디지털가축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축산관계자 및 차량 등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지원
7.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국가재난형 질병 발생 시 방역 대응
8. 지역 가축 매몰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사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⑫ 가축질병방역센터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의2와 같다.<신설 2017. 8. 8.>

제15조(식물검역부) ① 식물검역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 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식물검역부에는 식물검역과·수출지원과·위험관리과·식물방제과 및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를 두되, 수출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식물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위험관리과장 및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식물방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15. 1. 6., 2023. 8. 30.>

③ 식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5. 5. 26., 2017. 2. 28., 2021. 12. 14.>

1. 수입식물 검역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수입식물 검역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3. 외국 경유 물품의 국내 경유 승인에 관한 사항
4. 명예감시원의 관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식물방역법」 위반사범의 수사에 관한 사항
6. 식물검역관 자격관리 및 전문교육·훈련
7.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8. 식물검역홍보에 관한 사항
9. 남북한 반출입 식물검역
10. 식물검역 관련 장비의 수급 및 관리
11. 국제식물검역인증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2. 국내식물의 검역
13. 식물방역 긴급행동지침(SOP) 운영 등 위기관리·대응
14. 삭제 <2021. 12. 14.>
15. 삭제 <2021. 12. 14.>

16.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수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식물 검역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수출식물 검역에 관한 교육총괄과 법령·제도 운영
3. 식물검역에 관한 국제협력
4. 해외 식물검역정보의 조사·수집 및 분석
5. 외국의 식물검역제도 조사
6. 현지 검역관의 초청 및 파견에 관한 사항
7.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허용요건의 설정

⑤ 위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 9. 12., 2015. 5. 26., 2017. 12. 29., 2021. 6. 29., 2022. 5. 25.>

1. 삭제 <2023. 8. 4.>
2. 식물 병·해충 및 잡초에 대한 위험분석 및 관련기준 설정
3. 규제 병·해충 및 잡초의 지정
4. 삭제 <2023. 8. 4.>
5. 삭제 <2017. 2. 28.>
6. 수입금지품의 수입허용과 관련한 위험분석(소독분야는 제외한다)
7. 병해충 정보 및 관련 시스템 관리
8. 식물 병·해충 및 잡초의 분류 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⑥ 식물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5. 1. 6., 2015. 5. 26., 2017. 2. 28., 2021. 6. 29.>

1. 외래 식물 병·해충 및 잡초의 예찰·방제·역학조사의 계획수립 및 총괄
2. 수입식물의 격리재배
3. 수출입식물의 소독처리 기준 평가 및 설정
4. 수출입식물 방제업체·열처리업체의 지도, 감독 및 관리
5. 수출입 식물에 대한 소독방법의 개발 및 보급
6. 수입금지품의 허가 및 관리
7. 수출입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사에 관한 사항
8. 수출입식물 소독처리 제도의 운영 및 관리
9. 격리재배식물 검역관련 제도의 운영
10. 수입금지품의 수입허용과 관련한 소독분야 위험분석

⑦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5. 1. 6., 2015. 5. 26., 2017. 2. 28., 2017. 12. 29., 2021. 5. 6., 2023. 8. 4.>

1. 식물검역관련 조사·연구 업무
2. 식물검역기술 연구·개발
3. 해외 식물 병해충 및 잡초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4. 식물 병해충·유전자변형생물체(LMO) 및 잡초의 검사기법 연구·개발 및 정밀검사제도 운영
5. 수출입 식물에 대한 소독기법 연구
6. 식물검역기술 연구·개발 사업 계획 수립·평가 및 활용
7. 유전자변형생물체 식물의 국경감시업무

제16조(동식물위생연구부) ① 동식물위생연구부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동식물위생연구부에 연구기획과·세균질병과·구제역진단과·바이러스질병과·조류질병과·조류인플루엔자 연구진단과·해외전염병과 및 구제역백신연구센터를 두되, 연구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다른 과장 및 구제역백신연구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15. 1. 6., 2015. 12. 30., 2017. 8. 8., 2023. 8. 30.>

③ 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3. 26., 2025. 2. 25.>

1. 수의과학 및 식물검역 기술개발연구사업 기획·조정 및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2. 수의과학 시험연구사업 및 식물검역 기술개발연구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업무
3. 동물전염성질병 병원체의 수입허가 및 국외반출 승인 등 관리
4. 수의분야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4의2. 검역본부 내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의 운영 및 관리
5. 수의과학 및 식물검역 기술개발연구사업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수의과학 및 식물검역 기술개발연구사업 활성화 및 연구지원
7. 검역본부 보유 실험동물의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세균질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 9. 12.>

1. 동물의 세균성질병에 관한 시험·연구
2. 동물의 세균성질병에 대한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개량
3. 인수공통전염병에 관한 시험·연구
4. 브루셀라병 국제표준기술연구·개발 및 국제표준실험실 운영
5. 동물의 기생충성 질병에 대한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개량
6. 위생곤충에 관한 시험·연구·조사 및 병성감정
7. 원유(原乳) 검사 공영화에 관한 사항

⑤ 구제역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5. 12. 30.>

1. 구제역 진단에 관한 시험·조사 및 연구
2. 구제역 진단 및 방역기술의 연구·개발
3. 구제역 진단제제의 개량·개발 연구
4. 구제역 검사 및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5. 구제역 예찰 및 예찰기술 개발
6.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관리·운영

⑥ 바이러스질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의 바이러스성질병에 관한 시험·조사 및 연구
2. 동물의 바이러스성질병에 대한 진단·예방 및 방역기술의 연구·개발
3. 돼지열병 국제표준기술 연구·개발 및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4. 동물 바이러스 생물학적 제제 개량·개발
5. 돼지열병 청정화 검색·기술 개발 및 진단액 생산보급
6. 수의유전자원에 대한 관리 및 보존 연구
7. 수의생명공학 분야 및 반려동물 질병에 관한 시험·연구
8. 수의생명공학 관련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9. 동물위생 및 동물질병의 진단을 위한 특이세포 동물모델 및 바이오신약 개발 연구
10. 수의분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시험·연구

⑦ 조류질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 8. 8.>

1. 조류질병(조류인플루엔자는 제외한다)에 관한 시험·연구
2. 조류질병(조류인플루엔자는 제외한다)의 진단·예방 및 방역기술의 연구·개발
3. 조류질병(조류인플루엔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개량 연구
4. 삭제 <2017. 8. 8.>

5. 뉴캐슬병 국제표준기술연구·개발 및 국제표준실험실 운영

⑧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7. 8. 8.>

1. 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한 시험·조사 및 연구
2. 조류인플루엔자 진단·예방 기술의 연구 및 개발
3. 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한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 및 개량
4.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정밀 진단 및 정밀진단기관 지정·관리
5. 조류인플루엔자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⑨ 해외전염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 8. 8.>

1. 해외동물전염병의 조사 및 진단에 관한 시험·연구 및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2. 해외동물전염병에 대한 생화학적 및 면역학적 시험·연구
3. 해외동물전염병에 대한 생물학적 제제의 개량·개발
4. 전염성해면뇌증의 조사 및 그 진단기술에 관한 시험·연구
5. 곤충매개 해외동물전염병·매개곤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⑩ 구제역백신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5. 12. 30., 2017. 8. 8.>

1. 구제역 바이러스 특성 분석 및 종독화(種毒化)
2. 백신 제조용 고효율 세포주 및 부형제 연구·개발
3. 유전자재조합을 이용한 백신 연구·개발
4. 구제역 바이러스 대량 증식·불활화·농축·정제 기술 개발
5. 구제역 백신 제조공정 표준화 및 매뉴얼 관리
6. 구제역 백신의 평가기법 개발 연구
7. 구제역 항원뱅크 관리 및 운영

제17조(지역본부) ①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영남지역본부장 및 중부지역본부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고, 그 밖의 지역본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5. 26., 2022. 12. 20., 2023. 8. 30.>

② 인천공항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화물검역과·휴대품검역1과·휴대품검역2과·특수검역과 및 시험분석과를 두고, 영남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축산물위생검역과·식물검역과·시험분석과 및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를 두며, 중부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축산물위생검역과·식물검역1과·식물검역2과·시험분석과 및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를 두고, 서울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축산물위생검역과·식물검역과 및 전염병감사과를 두며, 호남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축산물위생검역과·식물검역과 및 시험분석과를 두고, 제주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축산물위생검역과·식물검역과 및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를 두되, 각 지역본부의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시험분석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하고,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장·휴대품검역1과장 및 특수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휴대품검역2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며, 영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식물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장은 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하고, 중부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식물검역1과장 및 식물검역2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장은 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하며, 서울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식물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전염병감사과장은 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하고, 호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식물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하며, 제주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식물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장은 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 8. 30.>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 5. 25.>

1. 보안 관리
2. 복무·교육훈련 및 일반사무
3. 소속 공무원의 연금·급여
4.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5. 기록물의 분류·접수·발송 및 수집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예산편성·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9.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민원제도개선 및 행정정보공개 운영
11. 그 밖에 지역본부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화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 9. 12.>

1. 화물검역·검사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2. 동물·식물 및 축산물의 검역
3. 특송화물·우편물품 검역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사
5. 가축전염병방역
6.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시행장 지정·관리
7. 수입식물의 검역장소 지정 및 관리
8. 수출입 식물의 방제업체 및 열처리업체 관련 업무
9. 수출입 동·식물 및 축산물의 검역 통계
10. 동물·식물 및 축산물의 검역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11. 동물복지 인증농장 점검 등 동물보호 관련 업무

⑤ 휴대품검역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 10. 31.>

1.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여행객의 입출국 신고·조사·검사 등 업무
2.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여행객의 휴대 동·식물 및 축산물 검역
3.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여행객의 검역·방역 홍보
4.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항공기 검역
5.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출국 사실 신고 업무
6.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에 대한 방역·소독·교육
7.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축산관계자 입·출국자에 대한 입출국신고 관련 유관기관 협력
8. 인천국제공항 축산관계자 신고·소독 국경검역관리시스템 운영
9.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입·출국 미신고자 과태료 및 벌금 부과
10.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가축전염병 방역
11. 그 밖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휴대품 검역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⑥ 휴대품검역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7. 10. 31.>

1.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여행객의 입출국 신고·조사·검사 등 업무
2.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여행객의 휴대 동·식물 및 축산물 검역
3.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여행객의 검역·방역 홍보
4.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항공기 검역
5.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출국 사실 신고 업무
6.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에 대한 방역·소독·교육

7.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축산관계자 입·출국자에 대한 입출국신고 관련 유관기관 협력
8.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입·출국 미신고자 과태료 및 벌금 부과
9.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가축전염병 방역
10. 그 밖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휴대품 검역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⑦ 특수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5. 5. 26., 2017. 10. 31.>

1. 수입동물의 사전신고 수리 업무
2. 동물계류장에 입고하는 수출입 동물의 임상검사, 검진, 시료 채취 등 검역업무
3. 동물계류장 축산물 보관장소에 입고하는 축산물의 검역
4. 동물계류장 가축전염병 방역업무
5. 수입신고된 소 개체식별번호 부여, 수입 소·쇠고기 이력관리 관련 업무
6. 동물계류장 및 축산물 보관창고 운영·관리
7. 검역탐지견의 현장 운영·관리

⑧ 시험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 10. 31., 2022. 5. 25.>

1. 식물 병·해충 및 잡초의 분류 동정 및 위험평가 관련 업무
2. 식물검역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격리재배검사에 관한 업무
4. 식물의 검사·검역 정밀분석
5. 식물검역관련 수입금지품의 사후관리 업무
6. 외래식물 병·해충 및 잡초의 예찰·방제·역학조사
7. 유전자변형생물체 정밀검정(식물에 한한다)
8. 그 밖에 식물 관련 분석·실험실 운영, 장비 및 도서관리

⑨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5. 5. 26., 2017. 10. 31.>

1. 수출입 동물 검역 및 제도 운영
2.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
3. 수입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
4.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시행장 지정·관리
5.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통계
6. 검역탐지견의 현장 운영·관리
7. 수입 축산물 화물목록 선별
8. 공항만 검역·소독 및 홍보
9. 수입신고된 소에 대한 소 개체식별번호 부여
10. 동물복지 인증농장 점검 등 동물보호 관련 업무
11. 가축전염병 방역(제주지역본부에 한한다)

⑩ 영남지역본부 및 호남지역본부의 식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 10. 31.>

1. 식물검역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수입식물의 검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
3. 수출입 식물검역장소의 지정 및 관리
4. 수출입 식물검역에 관한 통계
5.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6. 식물검역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식물방역법」 위반사범의 수사
8. 수출식물의 검역 및 교육
9. 여행객 휴대식물의 검역

10. 외국의 국내경유물품검사에 관한 업무
11. 수출입식물의 방제업체 및 열처리업체 관련 업무
12. 국내식물의 검역
13.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업무

⑪ 중부지역본부의 식물검역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 10. 31.>

1. 식물검역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수입식물의 검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
3. 수출입 식물검역장소의 지정 및 관리
4. 수출입 식물검역에 관한 통계
5. 식물검역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6. 식물검역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식물방역법」 위반사범의 수사
8. 식물검역 관련 명예감시원 관리
9. 남북한 반출입 식물 검역

⑫ 중부지역본부의 식물검역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 10. 31.>

1. 수출입식물의 검역 및 교육
2. 여행객 휴대식물의 검역
3. 외국의 국내경유물품검사
4. 수출입식물의 소독·방제업체 및 열처리업체 관련 업무
5. 국내식물의 검역
6.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업무
7. 수출입식물검역단지 지정·운영

⑬ 서울지역본부 및 제주지역본부의 식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 2. 28., 2017. 10. 31., 2022. 5. 25.>

1. 식물검역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수출입식물 검역 및 국내식물의 검사
3. 수출입식물의 방제업체 및 열처리업체 관련 업무
4.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업무
5. 식물 병·해충 및 잡초의 분류 동정 및 위험평가
6. 격리재배검사 및 조사연구사업
7. 외래식물 병·해충 및 잡초의 예찰·방제·역학조사(서울지역본부에 한정한다)
8. 식물검역관련 수입금지품의 사후 관리
9. 그 밖에 실험실 운영, 장비 및 도서 관리

⑭ 전염병검사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 10. 31.>

1. 수출입 동물의 전염병 검사
2. 수출입 축산물의 전염병 검사
3. 동물 전염병의 검사기술 개량에 관한 시험·연구

⑮ 영남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및 제주지역본부의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7. 2. 28., 2020. 2. 25.>

1. 외래식물 병해충 및 잡초의 예찰 및 긴급방제
2. 수입식물 재배지, 수출단지 등에서의 상대국 우려 병해충 관리
3. 식물병해충 의심 시료채취, 정밀검사 의뢰 및 역학조사
4. 국가단위 통합병해충 예찰방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제18조(지역본부의 관할구역) 검역본부 지역본부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지역본부 사무소) ① 지역본부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농업주사 또는 수의주사로 보한다.

② 지역본부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4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20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이 장에서 "농관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기획조정과·소비안전과·품질검사와·원산지관리과·인증관리과·농업경영체과·농업정보자재과 및 직불관리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 및 소비안전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품질검사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농업경영체과장·농업정보자재과장 및 직불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다른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농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3. 9. 12., 2015. 5. 26., 2020. 9. 8., 2021. 2. 25., 2023. 8. 30., 2023. 12. 27.>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 12. 27.>

1. 인사·문서·법령·보안 및 관인관리
2. 예산집행, 수입 및 자금관리
3.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4. 행정감사 및 복무관리
5.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6. 공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 청렴대책
7.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 12. 27.>

1. 농산물 품질관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변화관리업무 총괄
2.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조직 및 정원 관리
4.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5. 홍보계획 수립·조정 및 자료관리
6. 대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편성·배정 및 결산

⑤ 소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 9. 12., 2015. 5. 26., 2019. 10. 31., 2023. 2. 28.>

1.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2. 농산물 재배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3. 9. 12.>
4. 삭제 <2013. 9. 12.>
5. 삭제 <2013. 9. 12.>
6. 삭제 <2013. 9. 12.>
7.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8.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9. 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10. 안전성 분석방법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1. 사료의 검사 및 검정
12.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13. 사료검사원의 지정
14. 삭제 <2023. 12. 27.>
15. 삭제 <2023. 12. 27.>
16. 삭제 <2023. 12. 27.>
- ⑥ 품질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9. 12., 2016. 1. 12., 2023. 12. 27.>
 1. 농산물의 표준규격 제정 및 규격화 지원
 2. 농산물의 표준규격품 표시 관리
 3. 농산물검사 및 검정에 관한 사항
 4. 농산물검사관의 자격부여 및 검사기술 교육
 5. 양곡표시제에 관한 사항
 6.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검사품 사후관리
 7. 농산물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8.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우수식품인증 기관의 지정 및 우수식품인증(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은 제외한다)의 사후관리
 10. 지역농업활성화 관련 업무지원
 11. 인삼류 사후관리
 12. 술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13. 김치산업 교육훈련 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관리
 1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등의 산업 관련 교육훈련 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관리
 15.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산업 관련 교육훈련 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관리 및 차 품질 등의 표시제 관리
- ⑦ 원산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9. 12., 2015. 5. 26., 2015. 11. 13., 2016. 1. 12., 2022. 2. 22., 2023. 12. 27.>
 1.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단속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3. 지리적표시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6. 1. 12.>
 5. 명예감시원 운영관리
 6. 유전자변형생물체(사료용) 수입승인 및 취급관리
 7. 국내산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8. 양곡표시제 사후관리
 9. 유통이력관리 대상 수입 농산물 등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1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제 관리
- ⑧ 인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 9. 12., 2015. 5. 26., 2016. 1. 12., 2017. 2. 28., 2021. 2. 25.>
 1. 친환경농축산물·유기식품 등의 인증 및 사후관리
 2. 친환경농축산물·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3. 유기가공식품의 국가간 동등성 인정
 4. 농산물우수관리인증에 관한 사항
 5.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사후관리
 6. 삭제 <2023. 12. 27.>

⑨ 농업경영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5. 5. 26., 2020. 9. 8., 2022. 2. 22.>

1.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시행 계획 수립 및 운영
2.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 및 맞춤형농정 지원
3. 지역별 농업 관련 동향 분석 및 자료 생산·제공
4. 맞춤형농정 및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교육·홍보
5. 농업경영체 DB 구축·관리
6. 농업경영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
7. 농업인 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및 농업용 면세유 관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3. 12. 27.>

⑩ 농업정보자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5. 5. 26., 2020. 9. 8., 2023. 12. 27.>

1. 삭제 <2020. 9. 8.>
2. 삭제 <2020. 9. 8.>
3. 삭제 <2020. 9. 8.>
4. 삭제 <2020. 9. 8.>
5. 농업분야 공공데이터 정보개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업무전산화 및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8. 유통단계 농약의 품질·유통관리
9. 항공방제업 신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
10.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유기농업자재 관련 공시·품질인증 및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2. 비료 품질검사 계획의 수립·시행

⑪ 직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0. 9. 8.>

1. 공익직접지불제도 및 농타작물재배지원사업 이행점검 등 관리 총괄
2.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도 사업대상자 선정·자금집행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공익직접지불제도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 조사·단속에 관한 사항

제21조(시험연구소) ① 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농관원 시험연구소에 품질조사과·안전성분석과·성분검정과 및 원산지검정과를 두되, 품질조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농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안전성분석과·성분검정과 및 원산지검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15. 5. 26., 2016. 1. 12., 2023. 8. 30.>

③ 품질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5. 5. 26.>

1. 인사·문서·법령·보안 및 관인관리
2.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3. 업무 전산화 및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5. 곡물의 도정율 및 가공기술에 관한 조사·시험
6. 농산물의 저장관리에 관한 조사·시험

7. 쌀의 단백질 · 신선도 검정 및 검정방법 연구
8. 농산물의 검사규격 · 표준규격에 관한 조사 · 연구
9. 검사대상 농산물의 감정 및 측정방법에 관한 조사
10. 농산물의 발아시험 및 검정
11.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안전성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및 그 생산에 이용되는 농지 · 용수 · 자재의 유해물질 조사 · 분석
 2. 농산물의 유해물질 분석방법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3. 안전성분석에 대한 기술지도 및 숙련도 평가관리
 4. 안전성조사요원 및 분석요원의 교육
- ⑤ 성분검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료의 성분 및 잔류물질의 검정
 2. 사료의 성분과 잔류물질의 분석 · 검정방법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3. 농산물의 일반성분 검정, 우수식품 및 품질인증 술의 검정 · 시험연구
 4. 우수식품의 조사 · 분석 및 분석요원 교육
- ⑥ 원산지검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축산물의 원산지 검정
 2. 농축산물의 원산지 식별방법에 대한 시험 · 연구
 3. 유전자변형생물체(사료용)의 검정 · 수입 승인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판별기술에 대한 시험 · 연구
 5. 삭제 <2015. 5. 26.>
 6. 원산지 · 유전자 분석에 대한 기술지도 및 숙련도 평가관리
 7. 쌀 · 현미 품종 검정 및 검정기관 심사 · 평가

제22조(지원) ① 지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경기지원 및 전남지원의 지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 · 운영하는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

- ② 농관원 지원에 유통관리과, 품질관리과 및 경영직불팀을 둔다. 다만, 경기지원에는 유통관리과, 품질관리과, 경영직불팀 및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을 둔다. <개정 2015. 11. 13., 2020. 12. 8., 2023. 5. 31.>
- ③ 유통관리과장, 경영직불팀장 및 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농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품질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농업사무관 ·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1. 13., 2020. 12. 8., 2023. 5. 31., 2023. 8. 30.>
- ④ 유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기지원의 유통관리과장은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12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1. 13., 2016. 1. 12., 2022. 2. 22., 2023. 5. 31.>
 1.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관리
 2.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단속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3. 농산물검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공매양곡 사후관리 및 미곡종합처리장 기술지원
 5. 양곡표시제에 관한 사항
 6. 국내산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7. 농산물 표준규격품 · 우수식품 ·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8. 복무 · 문서 · 법령 · 보안 및 관인관리
 9. 예산 집행 및 회계 · 결산

10.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1. 술에 대한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12.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조사 및 열람
13. 그 밖에 지원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⑤ 품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5. 11. 13., 2020. 9. 8., 2021. 5. 6., 2022. 2. 22., 2023. 12. 27.>
 1. 친환경농산물·유기가공식품·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및 사후관리, 민간인증기관 사후관리
 2. 농산물 우수 관리시설 지정 및 사후관리
 3.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사후관리
 4. 삭제<2020. 12. 8.>
 5. 삭제<2016. 1. 12.>
 6. 삭제<2020. 12. 8.>
 7. 삭제<2020. 12. 8.>
 8. 삭제<2020. 12. 8.>
 9. 농산물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10. 농약 등 농산물 잔류유해물질 조사 및 조치
 11. 토양오염 우려지역 농산물 중금속 실태조사
 12.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분석
 13. 농산물 안전성관리에 관한 농가 교육 및 지도
 14.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5. 비료의 품질검사와 불량비료의 단속
 16. 유통농약·농약피해분쟁조정 조사 및 사후관리
 17. 항공방제업 신고처리 및 사후관리
- ⑥ 경영직불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0. 12. 8.>
 1. 농업경영체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익직접지불제도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5. 삭제<2021. 5. 6.>
 6.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⑦ 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3. 5. 31.>
 1.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관리
 2.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단속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3. 국내산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조사 및 열람
- ⑧ 삭제<2015. 11. 13.>

제23조(농관원 지원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농관원 지원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5. 26.>

[제목개정 2015. 5. 26.]

제24조(농관원 지원 사무소) ① 농관원 지원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농업사무관·행정사무관·농업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서울사무소, 인천사무소, 파주·고양사무소, 천안사무소, 익산사무소, 순천·광양사무소, 안동사무소, 부산사무소 및 진주사무소의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농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6., 2023. 8. 30.>

- ② 소장은 지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농관원 지원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5. 5. 26.>
[제목개정 2015. 5. 26.]

제5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제25조(농식품공무원교육원) ①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교육기획과 및 전문교육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다른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 8. 30.>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조직·문서·법령·보안 및 관인관리
2.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4.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상기금 운영 및 교육비 관련 업무
6. 원내 변화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의 총괄
7.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6. 5. 10., 2018. 9. 11.>

1. 장단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평가
2.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신규 교육과정의 개발
3. 교육운영심의회의 운영
4. 공무원의 공직가치 확립 및 국정과제 등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5. 교수요원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6. 국내외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지원
7. 교육자료의 개발·관리 및 도서관리
8. 교육생 설문조사 및 교육성적의 평가
9. 교육생의 선발·등록·학적 및 성적의 관리
10. 강의실·분임실·생활관 등 교육시설 운영
11. 정보화 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스템 운영
12. 삭제<2018. 9. 11.>
13.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운영 및 평가

⑤ 전문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6. 5. 10., 2018. 9. 11.>

1.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정의 설계·운영
2. 농업관련 민간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설계·운영
3.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설계·운영
4. 삭제<2016. 5. 10.>
5. 전문교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교재의 편찬·발간
6. 삭제<2018. 9. 11.>
7. 정보화 교육과정의 설계·운영

제6장 한국농수산대학교 <개정 2022. 5. 25.>

제26조(총장) ①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총장 1명을 두고, 총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2022. 5. 25.>

② 총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장 국립종자원

제27조(원장) ① 국립종자원(이하 이 장에서 “종자원”이라 한다)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②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8조(지원) ① 종자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지원을 둔다.

② 종자원 지원에 지원장 1명을 두되, 지원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강원지원 및 충북지원의 지원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 7. 10., 2013. 9. 12., 2015. 1. 6., 2017. 2. 28.>

③ 종자원 지원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제28조의2(지원 사무소) ① 종자원 지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원장 소속으로 사무소를 둔다.

② 지원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농업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③ 지원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9. 7. 23.]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29조(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으며, 별표 7의 정원 중 2명(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 3. 30., 2019. 6. 27., 2020. 9. 8., 2021. 12. 14., 2023. 8. 30., 2024. 3. 26., 2024. 9. 26.>

②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4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농식품 분야 신·재생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근로자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1명, 9급 1명)과 그 밖의 직급별 정원 중 7명(4급 또는 연구관 1명, 5급 5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19. 2. 26., 2021. 2. 25., 2021. 5. 6., 2022. 5. 25., 2022. 12. 20., 2023. 8. 30.>

③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농촌의 생활환경 정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 2. 26., 2022. 2. 22.>

제3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8. 3. 30., 2019. 2. 26., 2019. 7. 23., 2020. 9. 8., 2023. 8. 30., 2024. 3. 26.>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0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8. 3. 30., 2019. 6. 27., 2020. 9. 8., 2020. 12. 8., 2023. 8. 30.>

- ③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 ④ 한국농수산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개정 2015. 5. 26., 2017. 2. 28., 2022. 5. 25.>
- ⑤ 국립종자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개정 2015. 5. 26., 2019. 5. 14.>
- ⑥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1명(4급 또는 연구관 3명, 7급 8명)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또는 연구관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23. 8. 30., 2024. 12. 3.>

제31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9. 8.]

제32조 삭제 <2016. 5. 10.>

제33조 삭제 <2023. 8. 30.>

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20. 2. 25.>

제34조(평가대상 조직)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20. 9. 8.>

[본조신설 2020. 2. 25.]

제10장 한시조직 <개정 2025. 2. 25.>

제35조(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의 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2024. 12. 3.>

②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다.<개정 2018. 3. 30., 2024. 12. 3.>

[제목개정 2024. 12. 3.]

[제34조에서 이동 <2018. 3. 30.>]

제36조(농산업수출진흥과) ① 농산업수출진흥과의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농산업수출진흥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다.

[본조신설 2023. 4. 18.]

제37조(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 ①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37조의2(개식용종식추진단) ①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개식용종식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으며, 별표 17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개정 2024. 9. 26.>

[본조신설 2024. 4. 30.]

제38조 삭제 <2025. 2. 25.>

제39조

[제38조로 이동 <2018. 3. 30.>]

부칙 <제723호, 2025. 6.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수의주사보·시설주사보·통계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2명)은 2028년 6월 16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6월 17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2명(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명)으로 본다.

②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4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명(농업연구관 1명)을 제외한 별표 11의 정원 1명(공업주사보 1명)은 2027년 6월 25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2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 별표 11의 정원 1명(공업서기 1명)으로 본다.

제3조(정원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는 각각 별표 6의2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